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1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12. 1.

발의자 : 유남열의원의외 7인

1. 제안이유

2002회계연도 영등포구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(안)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우리 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

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

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(안)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1. 12. 1.

발의자 : 유남열의원의외 7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골자

- 구정질문·답변
 - 기간 : 2001. 12. 12 ~ 13. 14:00(2일간)
 - 장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 - 출석대상 : 부구청장, 감사담당관, 행정관리국장, 재무국장,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, 보건소장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
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